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namwon.go.kr](http://www.namwon.go.kr)

선 람	기관의장

제5호      2021. 1. 21(금)

<b>공 고</b>
------------

○ 남원시공고 제2022-169호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----- 1

회 람									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공고 제2022-169호

『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1일

남 원 시 장

##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### 1. 폐지이유

-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예산(보조금)과 유지관리(설치 마을에서 시행)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나
- 마을방범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시설비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「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

### 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21. ~ 2022. 2. 10. (21일간)

**4. 의견제출**

이 조례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 
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안전재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가. 의견 제출 사항**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**나. 의견 제출할 곳** : 우 55770 / 남원시 시청로 60, 의회사무국 건물 4층  
안전재난과

**다. 의견 제출 방법**

: 서면, 이메일(joohy2@korea.kr), fax(063-620-6747) 및 직접방문 등

**5. 기타사항**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안전재난과 통합관제(☎063-620-6937)로 문의하시기  
바랍니다.

**6. 붙임** :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#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1. .  
 제 출 자 : 남 원 시 장  
 제안설명자 : 안전재난과장

## 1. 폐지이유

-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예산(보조금)과 유지관리(설치 마을에서 시행)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나
- 마을방범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시설비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「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기 간 : 2022. 01. 21. ~ 2022. 02. 10. (20일간)
    - 결 과 :
  - 2) 비용 추계서 : 해당 없음
  - 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  - 4)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붙임

## 관련법령

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

제4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) ① 시장은 범죄 예방, 교통 단속, 위법 행위 단속, 재난·재해 예방,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5조(의견수렴)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로 설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,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